

202.19 호

### 행정명령

####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5월 17일 일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자금 지원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당 섹션의 의무 조항에 따라 고지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 급여 보호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받고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로 하여금 90일 이내가 아니라 적용 가능한 때에 해당 섹션의 의무 조항에 따라 고지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노동법(Labor Law) 806-b항 세부조항 1.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17일 일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에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서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일한 조정된 검사 우선 순위 지정 절차를 주 전역에서 수립합니다. 이러한 연구소는 이러한 뉴욕주의 조정된 절차가 지시하는 대로 단체 또는 개인의 검사에 대한 우선 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소는 보건부의 면제 없이 개인 또는 공공 단체를 위하여 검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뉴욕주에서 코로나19 검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조정하는 보건부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본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00 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 혹은 본 섹션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의 세 배 금액에 해당하는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커미셔너의 권한에 따라 해당 연구소의 운영 증명 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건 커미셔너의 면허 및 규제를 받고 운영하는 모든 숙련된 요양 시설, 양로원, 성인 돌봄 시설로 하여금 거주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가족 혹은 친척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202.18호에 포함된 지시사항은 이에 위반 사항 한 건 당 공중 보건법 12항 위반에 대한 매일 2,000 달러의 미준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개정되며 기타 관련 추후 위반은 공중 보건법 12-b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지방 정부 및 지방 보건부는 뉴욕주 보건부와 협의 없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방 정부 공무원도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또는 주정부의 결정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